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요금)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국 전자 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 정보 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스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 『지문보안토크』 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크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크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크 수령증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별표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개인은 1인1사만 등록가능)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4단계> 지문등록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서울지방청(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① 지문보안토크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5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별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아래를 참고하되, 등록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후 출력되는 시행문 확인 필수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각 증명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 공사등록의 경우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라.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인감증명서

4. 공통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